

아산시의회 공고 제2020-8호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아 산 시 의 회 의



1. 조례안 목록

조례안	발의의원	비고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미경 의원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수영 의원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안정근 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맹의석 의원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상 의원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영 의원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2.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한 : 2020년 5월 13일(수)까지

나.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3) 서면, 우편, 전자우편(pys9799@korea.kr), 팩스(041-540-2135)로 제출

4) 의견 제출할 곳 : (우)31512/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041-540-2905, 2628, 2705, 2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